

2024년 3분기 간주처리예산 보고

2024. 11. 27.

민생노동국

2024년 3분기(제6차) 간주처리예산 보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

□ 간주처리내역 및 사유

- 총2건, 1,335,460천원

-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20,000천원)

- 소비자 및 외식업체 대상 공공배달앱 인지도 제고와 이용독려를 위한 홍보 지원 사업으로, '24.4월 지방자치단체 참여 수요조사 시행 후 '24.5월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 교부 결정에 따라 간주처리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1634(2024.5.29.)호

- 양곡관리 (1,315,460천원)

- 25개 자치구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가 신청한 복지용 정부양곡 배송에 소요되는 택배비를 지원(10kg/1포대 2,800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 및 양곡 신청량 증가에 따른 추가 택배비를 반영한 '24.5월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 교부 결정에 따라 간주처리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2302(2024.5.24.)호

붙임 1. 2024년 3분기 간주처리 세부 내역 1부

2. 간주처리 근거 서류(교부결정 통지 공문) 각 1부

○ 제6차 간주처리 세부내역

- 세입예산

(단위:천원)

세입과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소 계	6,737,142	1,335,460	8,072,602
511-01 (국고보조금)	6,737,142	1,335,460	8,072,602

- 세출예산

(단위:천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소 계				(x5,540,000) 5,540,000	(x1,335,460) 1,335,460	(x6,875,460) 6,875,460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소상공인 간편결제의 안착 및 활성화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x-) -	(x20,000) 20,000	(x20,000) 20,000
도시생활속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유통거래질서 확립	양곡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x5,540,000) 5,540,000	(x1,315,460) 1,315,460	(x6,855,460) 6,855,460

○ 제6차 간주처리 내역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수신자 참조

제목 2024 회계연도 제6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알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에 대해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송부합니다.

I
붙임 2024 회계연도 제6차 간주처리 내역 1부, 끝.

서울특별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재난대응과장, 예방과장, 민방위담당관, 친환경건물과장, 문화예술과장, 체육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검검행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도시철도과장, 버스정책과장, 택시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농수산유통과장, 가족담당관, 다문화담당관, 일자리정책과장, 뷰티패션산업과장, 치수안전과장, 재난안전정책과장, 보행환경개선과장, 도로시설과장, 주택정책과장, 공공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전락주택공급과장, 주거정비과장, 공원조성과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주무관 노현지 예산총괄팀장 최은정 예산담당관 08/19 문혁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9745 (2024. 8. 19.) 접수 소상공인정책과-2117 (2024. 8. 19.)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15 /전송 02-768-8824 /hjra@seoul.go.kr /부분공개(5)

○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20,000천원)

청탁거절은 단호하게 청렴실천은 당당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2차)

1. 관련: 대구광역시 위생정책과-5662(2024.5.9.)호,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식품안전과-6855(2024.3.14.)호, 전라남도 식품의약과-3781(2024.2.6.)호, 경상북도 식품의약과-8028(2024.4.24.)호, 광주광역시 농업동물정책과-5709(2024.3.5.)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담당관-5809(2024.5.27.)호,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관-3215(2024.5.7.)호, 광주광역시 경제정책과-5922(2024.5.20.)호, 충청남도 경제정책과-7178(2024.5.23.)호,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7376(2024.5.13.)호.

2. 2024년 푸드서비스선진화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내역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2차 교부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422호)」 등

불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_2차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대구광역시장(위생정책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보건식품안전과장), 전라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경상북도지사(식품의약과장), 광주광역시장(농업동물정책과장), 서울특별시(소상공인담당관), 대구광역시(경제정책관), 광주광역시(경제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경제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소상공인과장)

주무관 김지순 사무관 박태준 식품외식산업과장 김재경
식품외식산업과장 2024. 5. 29.

협조자

시행 식품외식산업과-1634 (2024. 5. 29.) 접수 소상공인담당관-5865 (2024. 5. 29.)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머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 044-201-2158 /전송 044-868-7798 / kjs8688jp@korea.kr / 비공개

합치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수신 : 시·도지사

1.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불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사업명 : 푸드서비스선진화(내역 :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보조 사업자 : 지자체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사업규모 (단위: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응자	수익자부담
푸드서비스 선진화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3,700	1,850	1,850	-	-

○ 보조비율: 50%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외식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컨설팅 및 식재료 공동구매, 외식 분야 준비된 창업 지원을 위한 외식창업 공동체 구성·운영 등 맞춤 지원

교부목적: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 추진

예산과목 : 농특회계(구조개선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농림수산	식품업	2800 식품외식 산업육성	2837 한식 및 외식산업 육성	370 푸드서비스선진화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330-01 자치단체 경상보조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푸드서비스선진화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1,850,000	592,750	538,000	538,000	719,250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825,000	199,250	133,000	133,000	492,750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925,000	293,500	405,000	405,000	226,500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100,000	100,000	-	-	-

□ 지자체별 교부결정 내역

○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단위:천원)

시·도 (보조 사업자)	예산현액 (연간교부결정총액)			변 경	자 금 교 부		
	당 초				기교부	금회교부	누 계
	계 (예산현액)	'23이월	'24예산				
부산	5,000	-	5,000	-	5,000	-	5,000
대구	58,000	-	58,000	-	-	58,000	58,000
광주	65,000	-	65,000	-	-	65,000	65,000
대전	5,000	-	5,000	-	5,000	-	5,000
경기	45,500	-	45,500	-	45,500	-	45,500
강원	5,000	-	5,000	-	5,000	-	5,000
전북	20,000	-	20,000	-	20,000	-	20,000
전남	30,000	-	30,000	-	30,000	-	30,000
경북	60,000	-	60,000	-	50,000	10,000	60,000
경남	38,750	-	38,750	-	38,750	-	38,750
유보액	492,750	-	492,750	-	-	-	-
계	825,000	-	825,000	-	199,250	133,000	332,250

○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컨설팅)

(단위:천원)

시·도 (보조 사업자)	예산현액 (연간교부결정총액)			변 경	자 금 교 부		
	당 초				기교부	금회교부	누 계
	계 (예산현액)	'23이월	'24예산				
부산	30,000	-	30,000	-	30,000	-	30,000
대구	23,500	-	23,500	-	-	23,500	23,500
인천	62,500	-	62,500	-	62,500	-	62,500
광주	25,000	-	25,000	-	25,000	-	25,000
강원	15,000	-	15,000	-	-	15,000	15,000
전북	20,000	-	20,000	-	20,000	-	20,000
전남	108,000	-	108,000	-	82,000	26,000	108,000
경북	195,500	-	195,500	-	74,000	121,500	195,500
배달앱*	327,000	-	327,000	-	-	219,000	219,000
유보액	118,500	-	118,500	-	-	-	-
계	925,000	-	925,000	-	293,500	405,000	698,500

*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공동구매)

○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공동구매)

(단위:천원)

시·도 (보조 사업자)	예산현액 (연간교부결정총액)			변경	자금교부		
	당초				기교부	금회교부	누계
	계 (예산현액)	'23이월	'24예산				
서울	20,000	-	20,000	-	-	20,000	20,000
대구	100,000	-	100,000	-	-	100,000	100,000
광주	35,000	-	35,000	-	-	35,000	35,000
세종	8,000	-	8,000	-	-	-	-
충남	14,000	-	14,000	-	-	14,000	14,000
전남	100,000	-	100,000	-	-	-	-
제주	50,000	-	50,000	-	-	50,000	50,000
계	327,000	-	327,024	-	-	219,000	219,000

○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단위:천원)

시·도 (보조 사업자)	예산현액 (연간교부결정총액)			변경	자금교부		
	당초				기교부	금회교부	누계
	계 (예산현액)	'23이월	'24예산				
대구	25,000	-	25,000	-	-	25,000	25,000
경기	25,000	-	25,000	-	-	25,000	25,000
강원	25,000	-	25,000	-	-	25,000	25,000
경북	25,000	-	25,000	-	-	25,000	25,000
계	100,000	-	100,000	-	-	100,000	100,00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라. 중앙관서(또는 시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벌칙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4년 5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

○ 양곡관리 (1,315,460천원)

청탁거절은 단호하게 청렴실천은 당당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 양곡회계 정부양곡관리비(자치단체경상보조) 추가 교부결정 통지

1. 관련: 식량정책과-1954(2024.5.3.)호, 2104(2024.5.14.)호
2. 2024년 양곡관리특별회계 정부양곡관리비(자치단체경상보조) 보조금 예산을 불입과 같이 추가교부하오니, 시·도에서는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률 관리 관련 유의사항>

- 지자체경상보조 실행률 저조에 따라 사업 평가 관리 및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음
 - 각 시·도에서는 **소관 시·군에서 보조금을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현황 지속 점검**
 * (매월말) 집행 실적을 보텀e→e나라도움으로 송신
 * 특히, 전년도 집행률 부진 시·군에 대한 집중 점검 필요(집행률이 지속 저조한 시·군의 경우 '25년 가내시 통보 시 배정액을 실수요에 맞게 감소조정 요청)
 - 아울러, **보조금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년 내 집행 완료토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해야 할 경우 반드시 연도내 사전 승인 요청

붙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추가교부)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농수산유통담당관),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인천광역시(농축산과장),광주광역시(농업동물정책과장),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장),충청남도(농축산과장),경기도(지식친환경농업과장),강원특별자치도(지식친환경농업과장),충청북도(농식품유통과장),충청남도(지식스마트농업과장),전북특별자치도(농산유통과장),전라남도(농식품유통과장),경상북도(지식친환경농업과장),경상남도(지식친환경농업과장),세종특별자치시(농업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식친환경농업정책과장)



주무관 이선희 서기관 이현병 식량정책과 과장 2024. 5. 24.
장 변상문

협조자

시행 식량정책과-2302 (2024. 5. 24.) 접수 농수산유통담당관-7640 (2024. 5. 27.)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 044-201-1821 /전송 044-868-2306 / lsh6950@korea.kr / 비공개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청, 부산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남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청

1. 정부정책관리(지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였으나 불입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사업명 : 정부정책관리(지자체)

보조 사업자 : 사·도

사 명 계 요

가.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나.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세출용자	수익자부담
정부정책관리(지자체)	54,827,010	54,827,010	-	-	-

다. 보조비율 : 국비 100%

라. 사업내용

- (양곡관리 소요장비) 어미, 자부관리비, 전문가 활동 경비 지급 등
- (책매기) 기초생활수급자 상담회계를 통지용 할 책매기 지급
- (포장재 매기기) 정부관리담당자 용도별 포장재 매기기

교 부 목 적 : 정부정책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장비 개선

예 산 과 목 : 양곡관리특별회계 손익계상

분야	부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무사업	목·세목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2100 양곡관리	2131 양곡매입관리	366 정부정책관리	330-01 지정단체 경상토조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무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정부정책관리(지자체)	54,827,010	43,184,300	11,557,910	11,557,910	15,000	-

□ 지자체별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시·도 (보조사업자)	교부결정액	자 금 교 부		
		기교부	금회교부	누 계
서울	6,873,460	5,558,000	1,315,460	6,873,460
부산	3,964,930	3,236,100	728,830	3,964,930
대구	2,995,200	2,592,334	402,866	2,995,200
인천	3,147,616	2,351,500	796,116	3,147,616
광주	1,517,060	1,281,700	235,360	1,517,060
대전	1,424,080	1,184,800	239,280	1,424,080
울산	826,040	522,700	303,340	826,040
경기	8,236,270	6,124,800	2,111,470	8,236,270
강원	2,136,820	1,634,300	502,520	2,136,820
충북	2,632,840	2,072,900	559,940	2,632,840
충남	3,150,920	2,490,500	660,420	3,150,920
전북	3,641,640	3,063,400	578,240	3,641,640
전남	4,210,990	3,638,100	572,890	4,210,990
경북	4,379,620	3,269,766	1,109,854	4,379,620
경남	4,838,790	3,638,400	1,200,390	4,838,790
제주	458,690	348,000	110,690	458,690
세종	307,050	176,800	130,250	307,050
합계	54,742,016	43,184,100	11,557,916	54,742,016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시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4년 5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